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9월 21일  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# 1. 개정이유

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먹거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및 구성 현행화 (안 제17조)
- 나.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현행화 (안 제21조)
- 다. 먹거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 삭제 (안 제26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께서는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 (참조: 사회적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청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전화번호

- ※ 보내실 곳 : (우편번호 0366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 
서대문구청 제3별관 8층 사회적경제과
- 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30-4327, 팩스 02)3140-8045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』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 내용	의 건	비 고